

도선법 일부개정법률안
(임호선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1479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5. 7. 15.

발 의 자 : 임호선 · 권철승 · 전용기
서삼석 · 송재봉 · 조계원
정준호 · 장종태 · 김주영
전종덕 · 서영교 의원
(11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도선사가 「해상교통안전법」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도선하거나 음주측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또는 약물·환각물질의 영향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도선을 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도선을 한 경우에는 도선사 면허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음.

그런데 약물·환각물질은 음주와 달리 그 투약 여부를 측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부재하여 측정을 거부하는 경우 도선사 면허를 취소하거나 업무정지 처분을 할 수 없었는데, 「해상교통안전법」의 개정으로 약물·환각물질 투약 여부를 측정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이를 현행법에 반영할 필요가 있음.

이에 「해상교통안전법」을 위반하여 약물·환각물질 투약 여부 측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도선사 면허를 취소하거나 업무정지를

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약물·환각물질 투약 후 도선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여 해상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하려는 것임(안 제9조제1항제11호).

참고사항

이 법률안은 임호선의원이 대표발의한 「해상교통안전법 일부개정 법률안」(의안번호 제11476호)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,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.

법률 제 호

도선법 일부개정법률안

도선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9조제1항제11호 중 “제40조제2호”를 “제40조제1항제2호”로, “경우”를 “경우 또는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의 측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”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9조(면허의 취소 등)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도선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면허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. 다만, 제1호, 제2호의2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.	제9조(면허의 취소 등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
1. ~ 10. (생 략)	1. ~ 10. (현행과 같음)
11. 「해상교통안전법」 제40조 제2호를 위반하여 약물·환각물질의 영향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도선을 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도선을 한 <u>경우</u>	11. -----제40조 <u>제1항제2호</u> ----- ----- ----- ----- <u>경우 또는 같</u> <u>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의 측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</u> <u>우</u>
② ~ ⑥ (생 략)	② ~ ⑥ (현행과 같음)